

업무용빌딩 운영 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afety-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Operation of Business Buildings

김수태*

Kim, Soo Tae

요약

본 논문에서는 업무용빌딩 운영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동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중심의 안전관리를 시행하여 왔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의 관리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빌딩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빌딩내 시설물·설비 현황을 먼저 파악하였고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적용되는 안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였다.

Keywords : 중대재해처벌법, 시설물, 설비, 정기점검, 진단.

1. 서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정부 각 부처별로 해설서가 보급되어 왔으나 이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업무용 빌딩의 각 시설물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해설서나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물 및 건물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안전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 및 설비의 현황을 먼저 조사하였고 각 시설물 및 설비별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으며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조사하였다. 내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법령별 점검 또는 진단관련 사항을 확인하였고 각 시설별 안전관리 주체 또는 안전 관리자를 식별하였다.

표 1. 업무용빌딩 운영시 시설·설비별 적용되는 법령 및 주요내용

시설·설비	관련 법령	점검 및 진단	안전 관리자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진단, 시설물의 성능평가	관리주체(시설물 관리자, 시설물 소유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기존시설의 내진보강	건축주, 소유자
건축물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안전진단	관리자
	석면안전관리법	건축물석면조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점검, 정기점검 소방계획서작성	소방안전관리자
전기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체점검,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승강기안전관리자(관리주체)
기계설비	기계설비법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냉동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 용기등 검사	안전관리자
냉각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조치, 소독의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자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관리자

* 학생회원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재난안전전공 박사과정 kimsootae19@daum.net

시설·설비	관련 법령	점검 및 진단	안전 관리자
보일러	대기환경보전법	자가측정	환경기술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에너지관리자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관리법	실내공기질의 측정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수도시설	수도법	위생상의 조치(청소, 점검, 수질검사)	급수설비의 관리자
오수처리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기술관리인
기계식주차장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난방연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정기점검,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자
발전기연료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 대상시설 설치자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을 처리하려는자
사내식당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	조리사, 영양사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3. 결론

업무용빌딩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미 운영 중인 안전업무 매뉴얼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과 규칙 등을 개정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 구축하였고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자가 법에 정한 교육을 이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각 시설 및 설비의 개별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까지 의무이행 할 수 있도록 건물 내 각 시설물에 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점검 및 진단 주기를 확인하여 일정에 따라 점검이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업무추진 결과에 대하여는 반기 1회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경영책임자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안전활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시설기준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업무용 빌딩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안전관리 하기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관련.
- 국토교통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공중교통수단).
- 소방청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